

재산위치도 토지대장등 관련공부 목록

구분	목 록	비고
매각1)	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 지구 안에 위치	

신길3동 통계청주택조합 아파트  
부지내 구유지 매각

○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영등포구 신길3동 362-26호
- 지 목 : 대 지
- 매각대상면적 : 81㎡

○매각에 따른 의견

90. 10.26.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통계청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중 당초사업 승인 당시 구에서 매각키로 한 나머지 81㎡를 조합에서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자금융자 불가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준공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매각에 필요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1992. 11

永登浦區 區議會議員

조 연 제

신길3동 통계청주택조합 아파트  
부지내 구유지 매각

○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영등포구 신길3동 362-26호

- 지 목 : 대 지
- 매각대상면적 : 81㎡

○매각에 따른 의견

90. 10.26.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통계청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중 당초사업 승인 당시 구에서 매각키로 한 나머지 81㎡를 조합에서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자금융자 불가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준공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매각에 필요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1992. 11

永登浦區 區議會議員

권 혁 필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  
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1992. 11. 21.

발 의 자 : 안주영 의원외 6인

1. 제 안 이 유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대상
  - (1) 부구청장
  - (2) 보건소장

- (3) 총무국장
- (4) 재무국장
- (5) 시민국장
- (6) 도시정비 국장
- (7) 건설국장

- (5) 시민국장
- (6) 도시정비 국장
- (7) 건설국장

3. 관련 법 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- 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 65조

3. 구정질문 범위

가. '92년도 구정업무 전반

4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: 별첨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(안)

1. 목 적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'9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과의 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.

2. 관계공무원 출석일시

- 가. 일시 : '92. 11. 30~12. 1(2일간)
- 나. 장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다. 출석대상공무원
  - (1) 부구청장
  - (2) 보건소장
  - (3) 총무국장
  - (4) 재무국장